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20

발의연월일: 2023. 1. 17.

발 의 자:한병도·강준현·김영진

김철민 • 민병덕 • 유기홍

이학영 · 이형석 · 정태호

조응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3항 및 제58조의"를 "제3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제3 1. ----항·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 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제4 항, 제27조, 제38조제1항·제2 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 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 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 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 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 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 은 조 제2항·제3항의 개정규 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

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 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 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 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 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 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 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 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 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 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 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5 년 1월 1일

2. (생 략)<신 설>

<신 설>

<u>제3항</u>
의
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u> 3월 1일</u>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
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